

무인교통단속장비(이동식 단속부스) 이전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

무인교통단속장비(이동식 단속부스) 이전 설치 목적 및 주요 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 및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여 신호위반 또는 과속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.

2026년 8월 21일

파 주 시 장

1. 목 적: 무인교통단속장비(이동식 단속부스) 1개소 이전 설치에 따른 의견 수렴
2. 예고방법: 파주시청 홈페이지(www.paju.go.kr)
3. 예고기간: 2026. 8. 24. ~ 2026. 9. 12. (20일간)
4. 관련근거
 -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 제한)
 - 「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」 제23조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)
 -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(행정예고)
 - 「행정절차법 시행령」 제24조(행정예고의 대상)
5. 이전 설치 장소

구분	위치	대수	목적
철거	파주시 봉암리 920-9(봉암교차로 → 주라위삼거리	1	과속
이설	파주시 법원읍 술이홀로 1173(금곡삼거리 → 법원리)		

6. 의견제출

본 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^{붙임2}를 파주시 교통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, 반 여부와 반대 의견 시 그 이유)

나. 제출방법 : 방문, 우편 또는 팩스(☎ 031-940-5769)

다. 제출장소 :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, 파주시 교통정책과

라.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: 파주시청 교통정책과 (☎ 031-940-5791)

마.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.

붙임 1

무인교통단속(이동식 부스) 철거 대상(1개소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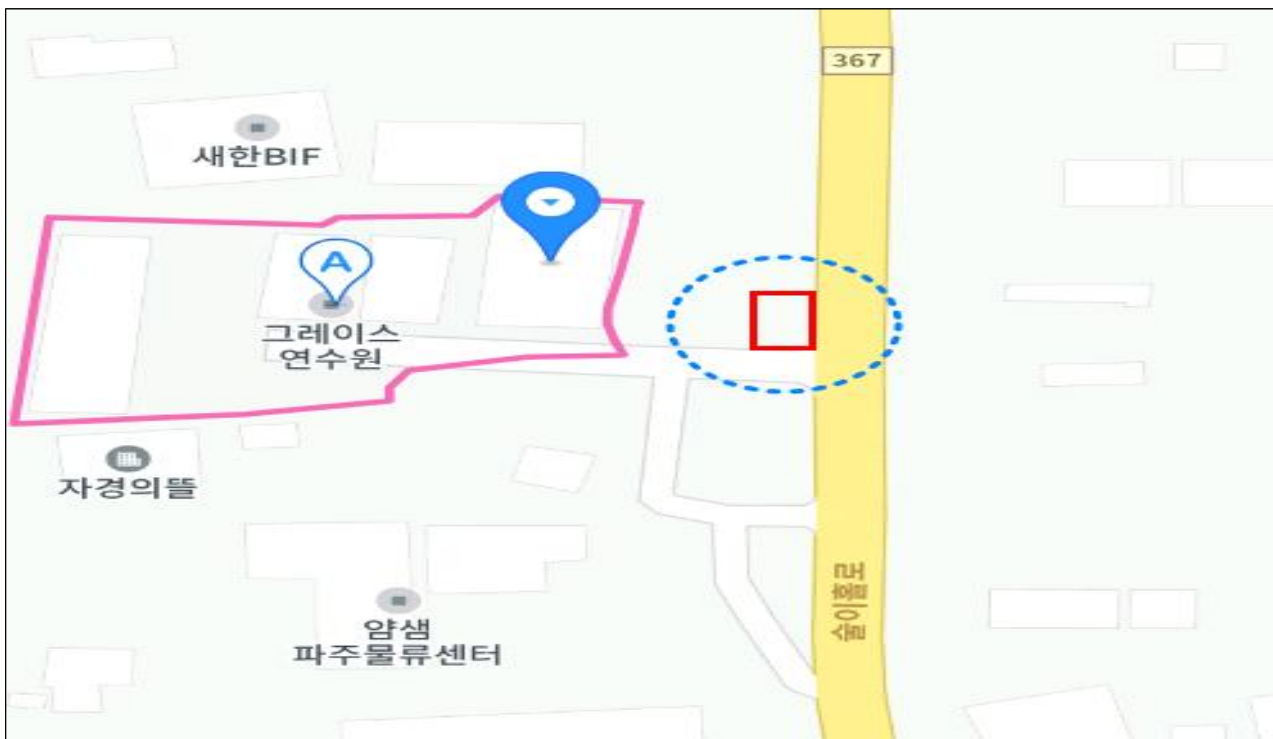
위치도(봉암리 920-9) 봉암교차로 → 주라위삼거리



현장 사진

붙임 1

무인교통단속(이동식 부스) 이전 설치 대상지(1개소)



위치도(법원읍 술이홀로 1173) 금곡삼거리 → 법원리



현장 사진

■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[별지 제11호서식] <개정 2014.7.28>

의견제출서

※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의견제출인	성명	
	주소	전화번호
의견제출 내용	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 행정예고	
	당사자	성명(명칭) 주소 (전화번호:)
	의견	
기타		

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제1항(제31조제3항)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의견제출인 (서명 또는 인)

파주시장 귀하

- 유의사항
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
2.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

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